

인천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단25686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석표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준만

변 론 종 결 2023. 6. 15.

판 결 선 고 2023.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12.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8,349,071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1. 30. 인천 중구 D 대 33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9. 12.

12. 위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차전112823호로 2017. 10.경부터 2017. 12.경까지 발생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20. 2. 28. ‘C은 원고에게 6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20. 3. 19. 확정되었다.

다. C은 2021. 12. 31.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C은 채무초과 상태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는 C의 대표이사 E의 배우자로서 별다른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88,349,07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주식회사 F(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G,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였던 H가 스웨덴 목재 조립식 주택의 모델하우스로 이용하기 위하여 신축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을 앞두고 F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H는 사업을 지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것이다.

나.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는지 여부

1) 갑 제5, 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C의 대표이사 E은 2019. 1. 3.까지 F의 대표이사였던 사실, ② F는 2019. 3.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명의자였던 이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변경받고, 2019. 8. 14. 피고에게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준 사실, ③ C은 2019. 4. 29.부터 2019. 9. 22.까지 F에 합계 108,1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는 2022. 11. 7.자 준비서면에서는 ‘피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2022. 12. 16.자 준비서면에서는 ‘F의 대표이사 H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피고는 H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2) 그러나, 을 제1, 8, 9호증(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H는 2018. 8. 8. 스웨덴 목조주택 업체인 ‘J’에 250,000크로나(한화 31,592,500원)를 송금하고, F는 위 업체에 2019. 3. 18. 1,050,000크로나(한화 129,066,000원), 2019. 11. 25.

103,517크로나(한화 12,667,375원)를 송금한 사실, ② F는 2019. 6.경 스웨덴 목조주택 업체인 ‘J’으로부터 171,231,257원 상당의 목재를 수입한 사실, ③ 피고는 2019. 12. 23.

258,000,000원을 대출받아 F에 2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가 F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즉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증여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동

